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77796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승형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가소154861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음식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1. 18. 피고와 사이에, 2020. 6. 13. 12:00경 위 빌딩 1층 F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는 예식계약(이하 ‘이 사건 예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식사비 1,450만원(하객 250명을 기준으로 산정, 결혼식 당일 하객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음), 대관비 350만원(기타 행사비 별도)

* 계약금 200만원(계약 당일 선정자 E이 신용카드로 결제), 잔금은 결혼식 종료 시에 지급하는 조건
다. 2020. 2. 29.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원고는 2020. 6. 13.에는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예정된 결혼식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계약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환불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예식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예식행사계약규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예식행사계약규정

4. 본 계약을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 또는 연기 시, 행사 당일 6개월 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 해지 또는 연기 시 계약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행사 당일 3개월 이하 해지 또는 연기 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 파기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각호 생략)

6. 행사를 연기하시는 경우에는 5개월 이전에 그랜드힐로 통보해 주셔야 하며, 연기 기간은

계약한 예식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날짜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예식예정일 기준 6개월이 남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예식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예식계약의 예식행사계약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예식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예식장 예약은 예식예정일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점, 예식장 고객이 예식예정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에 예식계약을 해제할 경우 예식장 업주로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예식계약의 예식행사계약규정은 약관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원고는 예식예정일 기준 6개월이 남지 않은 때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예식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예식행사계약규정 제4항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예식행사계약규정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식계약 예식행사계약규정 제4항은 고객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결혼식은 대개 신랑, 신부가 가족과 친지 등 하객들을 초청하여 그들 앞에서 혼인의 서약을 하고, 하객들은 이를 축하하는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결혼식의 준비과정에서는 예식의 규모나 세부적인 방식 등과 관련하여 예비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 가족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결국에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서둘러 예식계약부터 체결하여 결혼 준비기간이 길어진 때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 사건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유행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하객을 초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한 규모로 결혼식을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식장을 대관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결혼식에 어느 정도 규모의 하객들이 참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예식계약의 특성상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해제권은 그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로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다.

② 근래 상당한 숫자의 예식계약이 예식예정일 6개월 전에 체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예식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식장 업주로서도 3개월 정도의 기간만 확보된다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없다(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미룬 결과 예식장 고객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다). 예식예정일 3개월 전까지는 예식장 업주가 예정된 예식을 위하여 미리 비용을 지출할 일도 없으므로, 그 이전에 예식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예식장 업주에게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이 사건 예식계약 당시 시행되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이 그 귀책사유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한 때에도 예식장 업주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예식계약 체결 이후인 2020. 2. 1.부터는 고객의 사정으로 예식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개정된 예식행사계약규정을 사용하였다. 다만 2020. 9. 29. 개정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이 그 귀책사유로 예식계약을 해제할 경우 150일 전까지 통보한 때에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예식계약의 대규모 취소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등의 유행으로 인한 사정변경에 대하여 새로운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면서 음식점 업주와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체결된 이 사건 예식계약에 대하여 위 개정 표준약관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등은 예식예정일로부터 5개월도 남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예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예식계약에 적용된 피고의 예식행사계약규정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예식계약을 연기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해제하더라도 계약금은 전액 몰취될 수밖에 없다. 만약 예식예정일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250명의 하객을 기준으로 산정된 식사비와 대관비는 원고 등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정도 규모의 하객이 참여할 수 없어도 그 금액은 감액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계약조건은 결혼을 앞둔 음식점 고객인 원고 등의 계약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예식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이 사건 예식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도록 규정한 예식행사계약규정 제4항은 무효이다. 원고 등은 예식예정일인 2020. 6. 13.의 3개월 전인 2020. 3. 10. 이 사건 예식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2020. 4. 22.(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선정자명단

1. A
2. E. 끝.

